



제 41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허 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964호)

2024. 8.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허 영의원 대표발의(제2201964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3
가. 건축물 설계·시공 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준 준수 의무 신설(안 제23조, 제24조, 제113조)	3

I. 허 영의원 대표발의(제2201964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허 영의원 등 16인

나. 발 의 일 : 2024. 7. 18.

다. 회 부 일 : 2024. 7. 19.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구조물의 짧은 수명은 빈번한 재건축으로 이어지고 이는 집값 상승을 대표로 하는 부동산 문제로 이어짐. 또한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폐기물 발생은 환경 문제와 자원 낭비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함.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수명은 27년으로 일본 54년, 미국 72년, 독일 121년에 비해 매우 짧음. 이에 국토부는 2014년 12월부터 1천 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장수명주택 성능 등급을 확인하여 인증을 의무화 하도록 함.

국내 장수명주택 인증 등급은 최우수, 우수, 양호, 일반 4단계로 구분되는데 현재까지 최우수나, 우수 등급을 받은 주택은 없고 대부분 일반등급(99%)만을 취득함.

이에 건축물이 주변 환경과 조건에서 기능과 성능을 확보하고 유지 하도록 내구성을 고려한 설계 및 시공을 유도하여 사회적 손실을 줄

이고 국민의 재산과 안전 문제를 해결하도록 함은 물론,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해 건축물의 내구성 확보는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23조 제2항, 제24조제1항 및 제113조제1항제1호의2·제1호의3 신설).

3. 검토의견

가. 건축물 설계·시공 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준 준수 의무 신설(안 제23조, 제24조, 제113조)

현행	개정안
제23조(건축물의 설계) ① (생략)	제23조(건축물의 설계) ① (현행과 같음)
② 설계자는 건축물이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u>그 밖의 관계 법령</u> 에 맞고 <u>안전·기능 및 미관</u> 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물의 공법(工法) 등이 특수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 <u>「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 설계기준 및 그 밖의 관계 법령</u> ----- <u>내구성·안전성</u> ----- ----- ----- ----- ----- -----.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24조(건축시공) ① 공사시공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계약대로 성실하게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u>그 밖의 관계 법령</u> 에 맞게 건축물을 건축하여 건축주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24조(건축시공) ① ----- ----- ----- ----- <u>「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설공사 시공기준 및 그 밖의 관계 법령</u> -----.
② ~ ⑦ (생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11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13조(과태료) ①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신설>	1의2.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설계를 한 자(제106조제1항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1의3.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시공을 한 자(제106조제1항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 5. (생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은 건축물의 설계·시공 시 「건설기술 진흥법」¹⁾에 따른 건설공사 설계기준·시공기준(이하 “건설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1) 「건설기준 진흥법」

제44조(설계 및 시공 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건설공사의 기술성·환경성 향상 및 품질 확보와 적정한 공사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기준(이하 “건설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1. 건설공사 설계기준

2. 건설공사 시공기준 및 표준시방서 등

3. 그 밖에 건설공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건설기준을 정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건설기준 설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설구조물의 짧은 수명은 빈번한 재건축 및 이에 따른 부동산 문제로 이어지고,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폐기물은 환경 문제와 자원 낭비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므로,

건축물 설계·시공 시 건설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여 건축물의 내구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현행 「건설기술 진흥법」²⁾에 따른 건설기준은 지방자치단체, 건설기술 관련 민간 학회 등을 중심으로 작성·관리되는 기준으로, 자체로서 법적 구속력을 지닌 강행규정이 아닌 개별사업의 발주자·설계자·시공자 등이 공사시방서 등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 참고³⁾하기 위한 기준임.

2) 「건설기준 진흥법」

제44조(설계 및 시공 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건설공사의 기술성·환경성 향상 및 품질 확보와 적정한 공사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기준(이하 “건설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1. 건설공사 설계기준
2. 건설공사 시공기준 및 표준시방서 등
3. 그 밖에 건설공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건설기준 진흥법 시행령」

제65조(건설기준) ① 법 제4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기업·준정부기관
 4. 건설기술 관련 기관 또는 단체
 5. 건설 관련 기술의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 3) 예를 들어, 표준시방서는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자·설계자·시공자 등이 공사시방서 작성·검토 시 활용하기 위한 기준임(「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5조)

「건설기준 진흥법 시행령」

제65조(건설기준) ① ~ ⑤ (생략)

⑥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표준시방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건설공사의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축사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거나 검토할 때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으로 한다. (이하 생략)

【 건설기준 종류 】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준은 다음과 같음.

설계기준 (대분류 22개)						
공통사항	공통 설계기준	지반 설계기준	건설측량 설계기준	구조 설계기준	내진 설계기준	
시설물	가설물 설계기준	교량 설계기준	터널 설계기준	공동구 설계기준	설비 설계기준	조경 설계기준
사업분야	건축 구조기준	소규모 건축 구조기준		특수목적 건축기준		도로 설계기준
	철도 설계기준	하천 설계기준		댐 설계기준		상수도 설계기준
	하수도 설계기준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		

표준시방서 (대분류 18개)						
공통사항	공통공사	지반공사		구조재료공사		
시설물	가설공사	교량공사	터널공사	공동구공사	설비공사	조경공사
사업분야	건축공사	도로공사		철도공사	하천공사	
	댐공사	상수도공사	하수도공사	항만 및 어항공사	농업생산기반정비공사	

※ 자료: 국토교통부

그러나, 상기 건설기준을 일률적으로 건축물 설계·시공 시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현장여건·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과다 수준의 설계·시공을 요구하게 되어 사회적 낭비를 야기할 수 있고, 변화하는 신기술·공법을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워 산업 경쟁력 약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⁴⁾이 있음.

또한,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준 중 건축물의 내구성과 관련한 기준과 같이(참고자료 참조), 안전기준 확보를 위해 강행 규정화 필요가 있는 부분은 개별법령에서 해당 건설기준을 인용하여 법규성을 부여⁵⁾할 수

4) 국토교통부, 건설기술연구원(건설기준 관리주체), 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설협회 등이 건설기준의 일률적 강행 규정화로 인한 현장 혼란 및 기술발전 저해 등을 우려하는 의견 제시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85

5) 예를 들어, 건축설계·공사 시 「건축법」,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건축구조기준’을 적용하도록 법규성을 부여함.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규칙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건축물이 안전한 구조를 갖기 위한 최소기준으로 법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35조에 따른 건축물의 설계, 시공, 공사감리 및 유지·관리에 적용하여야 한다.

②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의 세부적인 기준은 법 제68조 및 이 규칙의 위임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소규모건축물[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 건축물의 경우: 건축구조기준

2. 소규모건축물의 경우: 건축구조기준 또는 소규모건축구조기준
(이하 생략)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규칙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건축물이 안전한 구조를 갖기 위한 최소기준으로 법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35조에 따른 건축물의 설계, 시공, 공사감리 및 유지·관리에 적용하여야 한다.

②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의 세부적인 기준은 법 제68조 및 이 규칙의 위임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소규모건축물[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 건축물의 경우: 건축구조기준
2. 소규모건축물의 경우: 건축구조기준 또는 소규모건축구조기준

※ 「건축구조기준»: 건축물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 (KDS 41 20 00 : 2022)

건축물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 (KDS 41 20 00 : 2022)

4.2.3 내구성 : (1) KDS 14 20 40을 따른다.

콘크리트구조 내구성 설계기준 (KDS 14 20 40 : 2022)

4.1.3 노출 범주 및 등급

(1) 책임구조기술자는 구조용 콘크리트 부재에 대해 예측되는 노출 정도를 고려하여 표 4.1-1에 따라 노출등급을 정하여야 한다.

표 4.1-1 노출 범주 및 등급 (상세내용은 생략)

: E0(일반) / EC(탄산화) / ES(해양환경, 제빙화학제 등 염화물) / EF(동결융해) / EA(황산염)

4.1.4 내구성 확보를 위한 요구조건

(1) 콘크리트 설계기준압축강도는 표 4.1-1의 노출등급에 따라 표 4.1-3에서 규정하는 값 이상이라야 한다. 다만, 별도의 내구성 설계를 통해 입증된 경우나 성능이 확인된 별도의 보호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표 4.1-3에서 규정하는 값보다 낮은 강도를 적용할 수 있다.

표 4.1-3 노출등급에 따른 최소 설계기준압축강도

항목	노출등급															
	-	EC				ES				EF				EA		
	E0	EC1	EC2	EC3	EC4	ES1	ES2	ES3	ES4	EF1	EF2	EF3	EF4	EA1	EA2	EA3
최소 설계기준 압축강도 f_{ck} (MPa)	21	21	24	27	30	30	30	35	35	24	27	30	30	27	30	30

(2) 노출범주 EC와 ES의 경우 KDS 14 20 50(4.3)에서 규정하는 최소 피복두께 이상의 피복두께를 확보해야 한다.

(3) 콘크리트 배합은 표 4.1-1의 노출등급에 따라 KCS 14 20 10(1.10)에서 규정하는 물-결합재비, 결합재 종류, 연행공기량, 염화물 함유량 등에 대한 요구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